

## 소방법시행규칙 개정

- 내무부령 제 667 호(1995. 12. 29) -

### ◇ 개정이유

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의 개정(1994. 12. 22 법률 제4800호 : 1995. 8. 10 대통령령 제14747호)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보수등에 관한 세부절차등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밖에 과도한 규제 및 불합리한 사항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.

### ◇ 주요골자

- 가. 건축허가등의 동의, 제조소등의 설치허가, 소방설비공사의 시공신고 및 감리결과의 통보시에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간소화함(제2조·제6조·제67조 및 제69조의 7)
- 나. 방화관리자의 선임기간을 건축물등의 완공일 또는 방화관리자가 해임된 날부터 30일이 내로 함(제4조)
- 다. 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정기점검의 종류,

- 점검의 구분, 점검방법 및 점검대상범위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(제10조의4 및 별표 2의2)
- 라.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포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1만제곱미터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자체점검에 대하여는 소방시설관리사가 행하도록 하던 것을 특수장소의 방화관리자도 행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자체점검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(제29조 및 제29조의2)
- 마. 소방시설점검업, 소방용기계·기구제조업 및 소방설비공사업등의 휴업신고등을 신고서 제출외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으로 할 수 있도록 함(제34조·제5조 및 제64조)
- 바. 하자보수보증내용의 제출, 하자발견시 조치사항 및 하자보수기간의 만료통보등을 규정함(제69조의14 내지 제69조의16)
- 사. 화재위험이 낮거나 비교적 소규모로서 소화기등 경미한 소방시설만 설치하면 되는 특수장소를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함(별표 1)

## 국가기술자격 검정일정 (1996년도)

### 가. 기술사

#### ○ 검정시행일정

회 별	원 서 접 수	필기시험	필기시험 합격(예정)자 발표(예정)	필기시험면제자 원서접수 • 응시자격서류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• 면접시험실비 납부	면 집 시험	합격자 발표(예정)
제46회	1월15일~1월17일	2월11일	3월25일	3월25일~3월28일	5월6일~5월11일	5월27일
제47회	4월8일~4월10일	4월28일	6월10일	6월10일~6월13일	7월15일~7월20일	8월5일
제48회	7월29일~7월31일	8월25일	10월14일	10월14일~10월17일	11월18일~11월23일	12월9일